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889

발의연월일: 2022. 12. 12.

발 의 자:지성호·권명호·김미애

김석기 • 김승수 • 김영식

박대수 · 박정하 · 박형수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허위로 표지를 부착한 자와, 시험기관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 받았으나 단순히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처분하여 행정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외 타 법령과 유사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목질판상제품'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3항제7호의3)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16조제1항제3호)
- 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자재 유형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1항제7호)
- 라. 건축자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 마.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개·보수 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제16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법률 제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6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22호"로,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으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실내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으로 한다.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 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실내 건축자재

를 사용한 자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6조제3항제7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등) ①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 ----(「주택법」 제2조 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 제22호-----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하지 않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 따른 표지를 붙인 -----실내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한 다. 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 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④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 ⑧ (생 략)

-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 제14조(벌칙) ①------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 6.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수 ·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 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 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 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u>⑥</u> ~ <u>⑨</u> (현행 제5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 지를 붙이지 아니한 실내 건축 자재를 사용한 자
 - 3. ~ 6. (현행과 같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삭 제
- 2. (생략)
-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
 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
 를 붙인 자

<신 설>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의2. (생 략) <신 설>
- 8. ~ 8의2. (생략)
-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9 (처체코 가스)
2. (현행과 같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
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8.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10 레19코레1장나타 레드화코이어
10. <u>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u>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